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월 27일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40호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일부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중 내용 오류 일부 개정

제20조 체육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내용 일부 신설

제30조 사용자 준수 및 제한 사항 내용 일부 개정

[별표6] 실내체육관 대관 사용료 내용 일부 개정, 빙상장 대관 사용료 공통사항 내용 일부 신설

[별표7] 개인 사물함 사용 관련 조항 및 별표 내용 오류 일부 개정

[별표8] 화성시 공공서비스 통합예약 시스템 적용, 특정사용자 제한, 선수훈련 신청 관련 내용 일부 신설

[별지 제12호 서식] 체육시설 사용 준수사항 대관 사용 제한 내용 일부 신설

부칙 (규칙 제40호, 2021.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칙 시행일까지의 사용·이용료의 감면기준과 환불기준은 「화성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본다.